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11. 13.
- 회부일 : 2020. 11. 13. (의안번호 : 20 - 183)

2.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자치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참여의식 고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자치회 확대(안 제3조)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7조)
- 주민자치회 감사 주기, 결과 외부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안 제15조)
- 주민자치회 회의 및 주민총회의 탄력적 운영(안 제18조 ~ 19조)

-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촉진(안 제22조)
-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삭제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제29조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 실시 추진 중이며 5개동으로 한정된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확대 근거 마련 및 서울시 표준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조례안 부칙에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 기존 시범동을 운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회 사업 확대 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자치회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를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로 한다.

- 안 제7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신설 내용과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명시하는 내용.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4.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안 제15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회 감사 주기, 결과 외부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하는 내용.
 -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 및 주민총회에 제출하고, 동 게시판 또는 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
 - 다만, 정기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안 제18조 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안 제19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검토 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안은 서울시 표준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반영한 것이며, 현재 서울시 주민자치회 현황은 2019년 22개구 136개동의 시작으로 2020년 25개구 259개동으로 확대에 따라 마포구도 순차적 시범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내용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을 추가 인정하고, 주민자치회 회의 및 주민총회의 탄력적 운영, 주민자치회 감사 주기, 결과 외부공개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신설 내용은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범동에 다양한 주민참여조직을 융합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시범동의 사업성 결과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장기화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회 5개의 시범동은 50개 사업을 신속하게 협력하면서 상당 부분을 완료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사업평가 진행 후 원인과 분석을 통한 지역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본 일부개정안이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됨.